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8 선고 2017가단509644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도기영, 안형윤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

담당변호사 박양진, 유주상, 류승현

변론 종결2018. 9. 11.

판결 선고2018. 11. 8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,714,332원과 그중 181,714,211원에 대하여 2017. 5. 10.부터 2017. 5. 31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가.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. 2. 15.1)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. 5. 24. 체결된 매매계약을 217,758,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217,758,4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 사이의 보증약정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, 보증사고 발생,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액수는 별지 '청구원인' 기재 사실과 같다.

나. 피고 B은 그의 소유인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2. 15.2)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, 2016. 7. 11.에는 피고 C 앞으로 2016. 5. 24.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위 각 부동산을 '이 사건 각 부동산',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을 각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 및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, 갑 제9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회사,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,714,332원(미회수 대위변제금 181,714,211원 + 확정지연손해금 121원)과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181,714,211원에 대하여

대위변제일인 2017. 5. 1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. 5. 31.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인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다. 위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, 2015. 10. 30.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,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처럼 당시 피고 회사는 공과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악화로 곤란을 겪고 있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얼마 안 있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. 실제로도 2017. 2. 22.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7. 5. 10. 대위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)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서울 구로구 D에 소재한 오피스텔인 E건물 F호(전용면적 64.71m²)가 있었는데, 2017. 4. 26. 기준으로 평가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70,998,240원이고, E건물의 다른 호실 중 전용면적 87.97m² 호실의 2016년 3분기 거래금액이 288,000,000원 정도인 사실, 한편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와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12,800,000원, G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,000,000원, 위 E건물 F호에 설정되어 있는 H에 대한 200,000,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와 I에 대한 채권최고액 70,000,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,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J조합에

대한 220,000,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.

피고 C은,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'이동식 가설펜스'의 발명자로서 위 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액이 268,000,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 B의 무자력을 다룬다.

피고 회사가 '이동식 가설펜스'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, 원고가 위 특허권에 관한 기술가치를 268,000,000원 상당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피고 B이 위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 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특허권을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,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) 이와 같이 피고 B이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.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.

4) 이에 대하여 피고 C은, 2012년부터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조로 거액을 대여하여 왔는데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그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).

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 C이 피고 B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

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

1)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

2) 그런데 갑 제9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5. 6. 18. 채무자 피고 B, 근저당권자 J조합, 채권최고액 286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, 피고 C은 2016. 7. 11.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. 7. 29. J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, 이와 별도로 J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5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원물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,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.

그리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권최고액 286,000,000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016. 7. 29. 기준으로 220,000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2017. 4. 26. 기준으로 평가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570,998,2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있는 570,998,240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220,000,000원을 공제한 350,998,24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.

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데, 2018. 9. 11. 기준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

217,758,465원(대위변제금 181,714,211원 + 확정지연손해금 121원 + 지연손해금 36,044,133원(대위변제일인 2017. 5. 10.부터 2018. 9. 11.까지))에 이른다.

그렇다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217,758,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C은 그

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17,758,4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
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미션

별지

- 1)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일자임
- 2) 등기부상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자가 '2015. 2. 15.'로 되어 있으나 피고 B와 피고 C이 2016.
2. 15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